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1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박상혁 · 이해식 · 한민수
이연희 · 남인순 · 이강일
강준현 · 허성무 · 김우영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

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3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5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② (생략)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17조제1항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第548條(出資의 納入) ①·② (생략) <u><신 설></u>	第548條(出資의 納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49조제1항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